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37
----------	-------

발의연월일 : 2026. 9. 17.

발 의 자 : 김정재·박충권·구자근
강명구·조지연·김성원
서천호·이헌승·김승수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매월 상당한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2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를 “그 밖에 통학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통학용 전세버스 등 통학차량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2.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3.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학생의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이용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통학거리, 통학 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학생의 연령, 통학 안전성 및 학생·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학 지원 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용 또는 이용권 지급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의12(통학 지원) ① (생략) <u><신 설></u>	제60조의12(통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u> <u>1. 통학용 전세버스 등 통학차량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u> <u>2.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u> <u>3.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u> <u>4. 그 밖에 학생의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이용권</u> <u>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통학거리, 통학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학생의 연령, 통학 안전성 및 학생·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학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
--	---